

● 제303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882)

2021. 12. 1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박기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882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 가. 제안자 : 박기재 의원 외 44명
- 나. 제안일 : 2021년 10월 15일
- 다. 회부일 : 2021년 10월 20일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수탁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통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또한 향후 구사회복지협의회 설립 확대, 서울형 복지모델 개발 및 역할 수행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 예산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시장은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음.
- 제정안은 6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례의 목적(안 제1조)은 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시장의 책무(안 제2조)로 사회복지협회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지원사업(안 제3조)으로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협의회와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 간 제1호 관련 협력사업,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명시하고, 예산지원(안 제4조)은 시장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안 제5조)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조례안의 조문 배열>

제1조(목적)	제4조(예산지원)
제2조(시장의 책무)	제5조(지도·감독)
제3조(지원사업)	제6조(시행규칙)
	부 칙

2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조례안의 필요성

- 사회복지협의회는 '99년 1월에 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임.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②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2. 1. 26.>

④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2.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5.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6.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8.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9. 시·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0.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1.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사회복지협의회는 2실(행정회원관리실, 정책협력실), 3센터(사회복지정보센터, 사회공헌센터, 에너지복지시민기금), 1수탁사업(광역푸드뱅크센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총 35명임. 법인구성은 이사 22명, 감사 2명, 회원 496명(단체회원 438명, 개인회원 58명)로 이루어져 있음.



〈그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조직도

〈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부서별 인력현황

(2021.12.13. 기준)

구분	인원
회장(비상근 명예직)	1명
사무총장(상근직)	1명
행정회원관리실	4명
정책협력실	5명
서울시사회복지정보센터	4명
서울사회공헌센터	4명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3명
서울특별시 광역푸드뱅크센터	13명
총계	35명

- 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기능은 법 제33조에 따른 사항으로 사회복지 시설·기관, 관련 단체 협의조정사업, 사회복지교육원 운영, 조사연구 사업, 정책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주요기능

1. 사회복지시설·기관, 관련 단체 협의·조정

-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서울사회복지걷기대회, 사회복지 신년인사회, 사회복지직능위원회, 사회복지법인 소통나눔콘서트, 서울복지상황지도, 구협의회 육성사업

2.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 사회복지정책담당회, 서울복지포럼, 서울복지연구원, 정책위원회 운영

3.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훈련

- 직급별 교육, 직무별 교육, 전문교육, 재무·회계교육, 소규모복지시설종사자 교육, 시설안전 관리교육

4. 서울특별시 광역푸드뱅크센터 운영

- 서울특별시 광역푸드뱅크센터 운영, 기부활성화사업, 푸드뱅크·마켓 사업평가, 실무자교육, 식품기부 후원자 감사의 밤

5.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 서울복지정보망(s-win) 운영, VMS인증센터 지정 및 인증요원교육,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자원봉사관리자교육

6. 시민 복지수요에 기반 한 민간자원개발 및 연계

- 서울사회공헌센터 운영, 민간자원개발 및 연계, 사회공헌정보공유사업

7. 시민 참여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지원을 통해 에너지 나눔의 가치 실현

-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 모금사업,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

- 현재 17개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중 서울시 등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표〉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 제정 현황

시도	조례명	제정일
경상남도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2012.01.12
경기도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2014.05.02
전라남도	전라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2019.03.1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2019.09.3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2020.04.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7.10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2020.07.14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2020.10.05
충청북도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2021.02.1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	2021.07.14
경상북도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2021.11.01

나. 총칙규정(안 제1조~안 제3조)

- 본 조례안은 총칙규정에서 목적(안 제1조)과 시장의 책무(안 제2조), 지원 사업(안 제3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조가 담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목적은 법 제33조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으며, 조례안 제3조의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사업은 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따른 사항임.
- 상위법 상 사회복지협의회 설립근거 및 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 제정 목적 및 지원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예산지원 및 지도·감독(안 제4조~안 제5조)

- 조례안 제4조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인 바, 이는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한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또한 조례안 제5조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체계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됨.

라. 집행부의견

- 집행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한 사항인 바, 이에 조례를 제정하는 원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협의회에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도 쟁점사항은 없음.
- 사회복지협의회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을 추진하여 민간주도의 사회복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문 의 처

허아름 입법조사관 (02-2180-8145)

별첨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현황

□ 설립목적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

※ 설립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 연혁

- 1985. 2.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창립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울지부)
- 1999. 1.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로 설립

□ 법인개요

-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 대표 : 회장 김현훈 ※ 現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대표이사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6층
- 임원 : 24명 [이사 22명 (회장1, 부회장4, 이사17), 감사 2명] ※ 외부추천이사 7명
- 회원 : 총 496명 (단체 438, 개인 58)
- 직원수 : 35명

(2021.12.13. 기준)

구분	회장	사무총장	행정회원 관리실	정책협력실	서울사회복지 정보센터	서울사회공헌 센터	서울특별시 광역푸드뱅크센터	서울에너지 복지시민기금
계	1	1	4	5	4	4	13	3
정규직			4	5	3	4	11	-
비정규직	1(비상근 명예직)	1(상근총괄)	-	-	1	-	2	3

□ 주요사업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계몽 및 홍보, 종사자 교육훈련 및 복지증진
-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국제 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 서울특별시장 또는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 푸드뱅크/마켓사업, 사회복지정보센터(사회복지지원봉사 실적인증관리사업, 지역사회봉사단 운영 등)

□ 사회복지 직능협회 현황(16개)

(2021.12.13. 기준)

번호	단체명	성명/직위 (소속기관)	회원 시설	시설종류	소관부서
1	서울시노인복지협회	한 철 수 회장 (남부노인전문요양원)	73	노인 요양, 양로시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돌봄팀, 요양보호팀
2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이 은 주 회장 (도봉노인종합복지관)	46	노인복지관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정책팀, 인생이모작시설팀
3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김 성 희 회장 (홍제어린이집)	1,749	어린이집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공보육기반팀
4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김 연 은 회장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99	사회복지관	지역돌봄복지과 복지시설팀
5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이 소 영 회장 (이든아이빌)	59	아동 양육, 보호치료, 자립지원시설 등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아동복지팀
6	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임 한 길 회장 (성심모자원)	22	한부모 자립지원시설 등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가족정책팀
7	서울시장재인복지관협회	임 형 균 회장 (기쁜우리복지관)	51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이용시설팀
8	서울시장재인복지시설협회	허 곤 회장 (늘편한집)	153	장애인거주,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9	서울시장재인직업재활시설협회	김 영 환 회장 (EM실천)	129	장애인직업재활, 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10	서울시장재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	홍 금 화 회장 (성신푸른초장주건보호시설)	169	장애인주간보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11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김 인 준 회장 (은평신사태이케어센터)	206	재가노인지원센터, 주간보호시설, 방문요양시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돌봄팀, 요양보호팀
12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안 수 경 회장 (강남지역자활센터)	30	지역자활센터	자활지원과 자활사업팀
13	서울노숙인시설협회	배 명 희 회장 (길가온혜명)	40	노숙인시설	자활지원과 자활시설팀
14	서울정신재활시설협회	최 동 표 회장 (한마음의집)	98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이용시설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팀
15	서울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김 명 자 회장 (은광지역아동센터)	157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돌봄운영팀
16	서울시니어클럽협회	조 범 기 회장 (은평시니어클럽)	18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사업팀